

안 건

정관개정 건

2024년도 에너지전환포럼 정관 변경 사항(신구조문대비표)

내용	기존 정관	신 정관
(추가) 수의사업	<p>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p> <p>2.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p> <p>3.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p> <p>4.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p> <p>5.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p> <p>6.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p> <p>7.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출판, 전시·홍보사업</p> <p>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제3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활동</p> <p>2. 에너지전환 정책입법에 대한 건의 및 지원활동</p> <p>3. 에너지전환 관련 정보제공 및 소통 활동</p> <p>4. 에너지전환을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p> <p>5. 에너지전환 관련 자체 연구 및 외부의 연구 활동</p> <p>6. 에너지전환 관련 외국 및 국제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활동</p> <p>7.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한 교육·출판, 전시·홍보 및 판촉물 등의 판매사업</p> <p>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p>
(변경) 가입절차	<p>제5조(회원의 자격)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하고,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단')의 입회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얻는다. ②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회원의 자격) ①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u>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u> 회원 자격을 얻는다. ②회원의 자격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운영규칙으로 정한다.</p>

<p>(변경, 추가 및 삭제) 임원의 종류와 정수 규정</p>	<p>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p>1. 공동대표: 5인 내외 (상임공동대표 포함) 2. 감사 : 2인 이내 3. 이사 : 3인 이상 50인 이내 (등기이사 포함) 4. 연구이사 : 50인 이내</p> <p>② 제1항의 임원 중 감사 임원의 정수는 선거공고 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p>	<p>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p>1. 공동대표 : 5인 내외(상임공동대표 포함) 2. 감사 : 1인 <u>이상</u> 3. 이사 : <u>3.1. 등기 이사(상임공동대표 포함) 5인 이상</u> <u>10인 이내</u> <u>3.2. 비등기 이사 50인 이내</u> 4. 연구이사 : 50인 이내</p> <p>(삭제)</p>
<p>(변경) 임원의 선출</p>	<p>제11조(임원의 선출) ①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p> <p>③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포럼의 창립 시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1조(임원의 선출) ①상임공동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공동대표와 이사는 총회에서 <u>인준받는다</u>.</p> <p>③연구이사는 공동대표단이 협의하여 선임하되 에너지전환 관련분야의 인사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 상세한 선출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포럼의 <u>창립 시</u> 초대 임원의 선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등기대표는 1인으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p>
<p>(삭제 및 추가) 임원의 선임 제한</p>	<p>제14조(법인 등기임원) ①등기대표는 1인으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②등기이사는 3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걸쳐 자정한다. ③등기대표 이외의 임원은 법인등기 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등기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p> <p>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p>

(변경) 임기 및 보선	제15조(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추가) 의결권 설명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관리의 승인 6. 포럼의 해산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회원의 의결권)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관리의 승인 6. 포럼의 해산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이사회로의 위임 사항 9.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② 권리회원(정회원)인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추가) 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제24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 ②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 ② 총회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회의를 병합한 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 ③ 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어 변경)	제2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포럼 등기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단어 변경, 추가)	제26조(의사 기록 날인 및 공증절차) 본 법인의 정관 제25조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 대행자는 본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의사 기록 날인 및 공증절차) 본 포럼 의 정관 제25조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및 공증 위촉 대행자는 본 포럼 등기 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추가) 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제30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제30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의결) ①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이

	것으로 한다. ②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회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회의를 병합한 대면 및 온라인 화상회의로 한다. 회의 출석과 서면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③의사정족수는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경)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 등기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u>본 포럼 등기이사</u> 3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및 변경)	제3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2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삭제)	제34조(재원)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지정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재원) 포럼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자정기부금,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출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변경) 오타수정	제38조(사무처) ①포럼은 사무·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38조(사무처) ①포럼은 <u>사무·회계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u>
(변경) 공개일 변경	제43조(기부금 모금액 공개)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제43조(기부금 모금액 공개)포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변경) 오타수정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포럼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포럼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